

법적 절차에 따른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로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체계 확립

부서명	법무처	담당	박상민	연락처	내선 2033
------------	-----	-----------	-----	------------	---------

□ 선정근거

-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28) 부정승차 부가금 왜 30배일까?’ 中,
『서울시 인터넷 소식지 ‘내손안에 서울’』, 2014. 12. 23.
“...현재 부정승차 발생 상황에 비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무원의 재량으로 부가금을 깎아주었다든지 과다하게 부가금을 내어 억울하다든지 하는 논란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승차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정승차 방지 효과가 있다. 또한 아무리 부정승차를 해서 단속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투명해야 스스로 납득을 하고 반성을 하는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관계기관에서는 부정승차 단속의 절차와 처리결과, 실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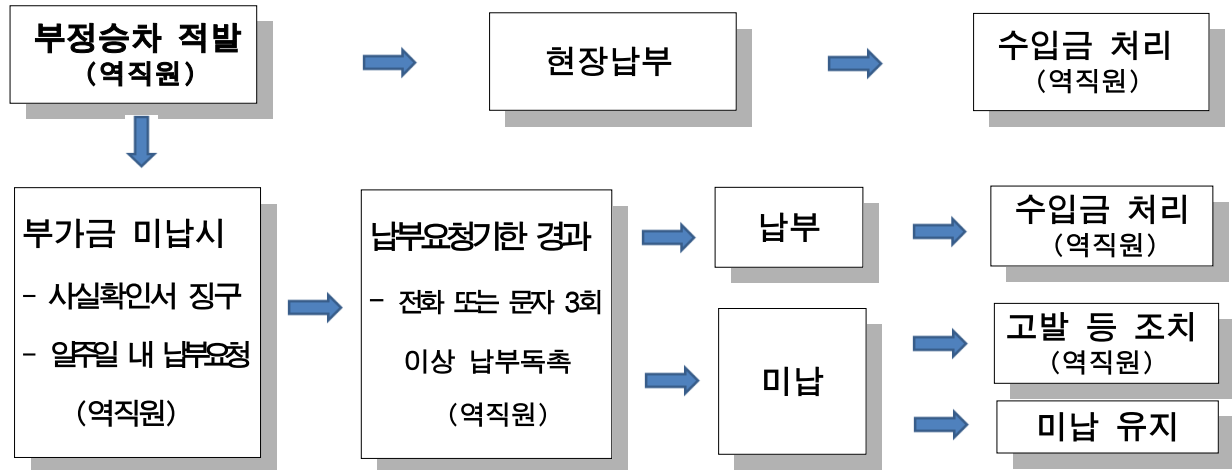
- 부정승차 단속 불만민원 (공사 VOC 中, 2013. 6. 24.자)
“...벌금을 부과한 영수증도 지로를 통한 영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장영수는 신뢰가 안가고 역무원이 좀 더 고객의 상황을 배려하는 업무처리를 했으면 한다.”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시 법적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공사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정승차 단속에서부터 증거자료 수집, 사실확인서 징구, 납부독촉 등을 통해 부가금 징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역직원이 전담 처리



○ 문제점

- 표준화된 업무처리 프로세스 부재 ⇒ 개인별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유발 및 법위반 등 공사이미지 저해
- 대대적인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정당승차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사회정의 실현에 저해
- 적절한 업무관리 시스템 부재 ⇒ 부가금 임의감면, 고액 부가금의 개인현금수납 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 있음
-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사지원시스템 부재 ⇒ 단속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수입금 누수 및 직무해태 유발

○ 관련법령

- 1)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여객운송약관 제27조(무표)
 - 부정승차자에게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

부과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타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3)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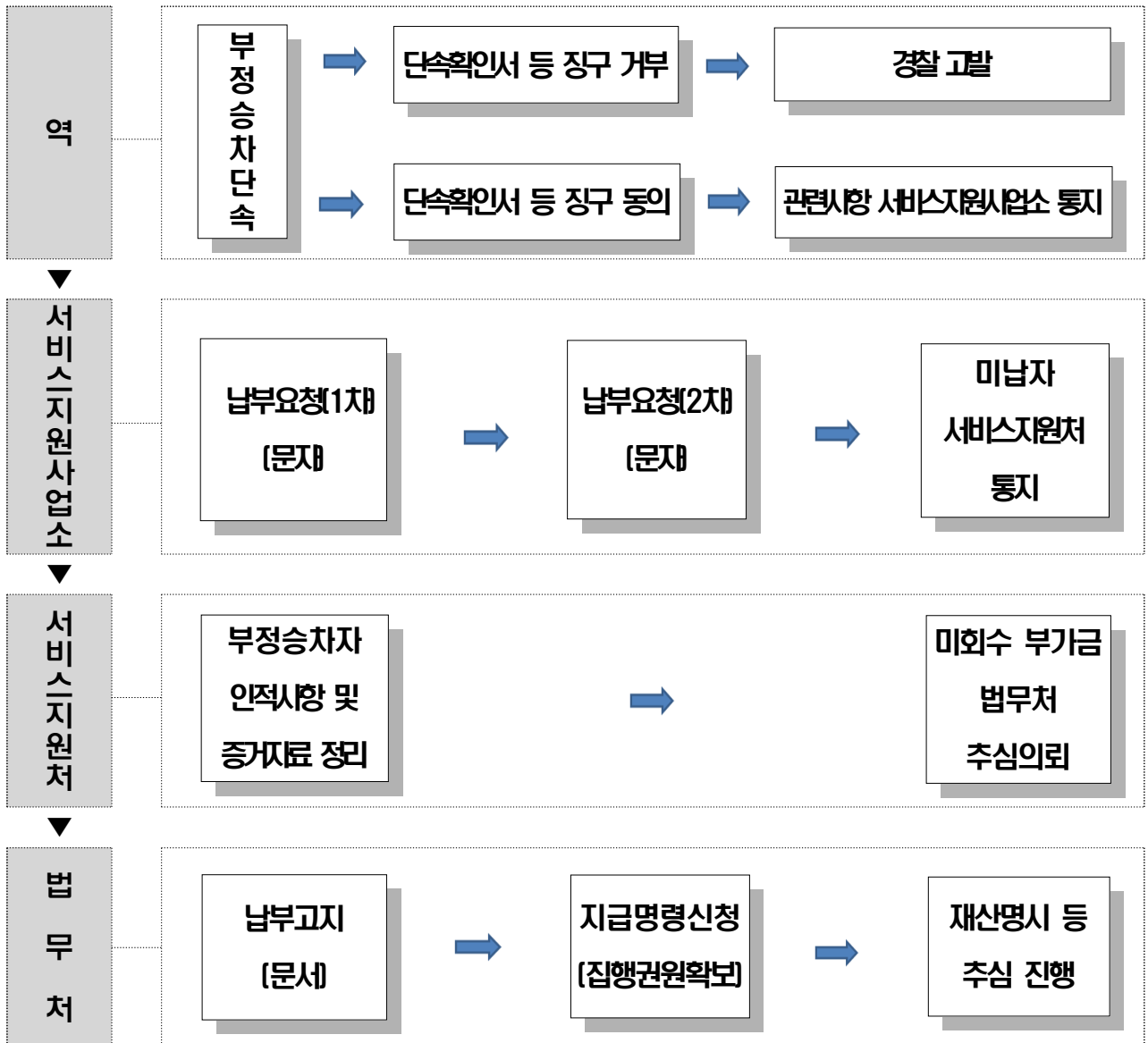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개선방향 및 계획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T/F 추진,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개선방향 수립 시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 유피스 부정승차단속관리 시스템 구축(2015년 4월 테스트 기간 거쳐 본격 활용을 위한 세팅완료)



- 표준화된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
⇒ 업무를 명확히 구분, 주체별 분업화



□ 기대효과

- 법적 절차에 따른 부가금 징수로 징수율을 높이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
- 표준화된 업무처리 프로세스로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처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현장에서의 개별업무처리에 따른 민원유발이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대중교통운영기관 중 최초로 법적절차에 따라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 시행(※ 타 기관 벤치마킹 진행 중)

□ 향후일정

- 법무처-727(2014.11.12.)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T/F 운영 계획」 (기시행)
- 법무처-1134(2014.12.16.)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안) 통보」 (공청회 개최 요청문서 - 기시행)
- 사장방침-424(2014.12.31.)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안)」 (기시행)
- 서비스지원처-1306(2015.03.31.)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시행」 (기시행)
- 표준화된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른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시행 중 (2015. 6.~ 계속)
- 타 기관 전파 및 방송 홍보 예정 (지속적으로 접촉 중)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10월경)